

한국 사회의 다양한 폭력의 양상을 분석해 보면 한국 교회는 폭력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 20장을 주해하여, 한국 교회가 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한국 교회가 폭력의 가해자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본 논문은 한국 교회는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

한국 교회: 폭력의 원천인가, 도피성인가?

김 지찬 | 총신대

1. 문제 제기와 절차

1) 문제의 제기

한국 교회가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불신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 중에 한국 교회가 비축한 재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비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 이런 상황을 인식한 한국 교회는 십 수년 전부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사회적 약자들 - 매맞는 가족 구성원, 장애우, 외국인 노동자들 - 과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교단적으로나 다수의 지교회들이 복지 재단을 설립하는 등 복지 사업에 열심을 내고 있다.²⁾

1) 김 은수, "기독교 사회복지의 신학적 패러다임," 「신학 사상」 통권 제 112호 (2001.3), 163-182쪽, 특히 163쪽. 김 은수/이 신희, "기독교 사회복지 신학 모색을 위한 기초적 작업," 「기독교 사상」 통권 제 475호 (1998.7), 142-156쪽, 특히 142쪽.

2) 김 지찬, "구약 성서에서의 사회복지," 「한국 기독교 사회 복지 총람」 (서울: 사단법인한국기독교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폭력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한국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도와야 하는지를 구약을 기초로 논의하려고 한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지난 1세기 동안 일제 강점과 6.25 전쟁을 통해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근래에 들어와서도 폭력이 지능화, 구조화되면서 최근에는 폭력이 사회의 전 분야로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폭력은 악” 이라고 단정하고 폭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실제로는 폭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고재식의 말을 들어보자.

‘폭력은 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폭력으로부터 초연해 있으며 절대 폭력에 개입되지 않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폭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제 3자적 입장이 가능하겠는가? ...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문화, 학교 문화, 직장 문화를 통하여 사회적 성격을 형성해 가는 사회화 과정도 일종의 폭력이라 말할 수 있다. ... 그러므로 폭력을 절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 3자적 입장은 인간이 자기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극히 위선적인 태도이다. ... 그러므로 폭력은 우리 자신이 개입된 폭력들 사이의 관계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폭력 자체에 대한 제 3자적, 중립적, 추상적 가치 판단 보다는 삶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폭력이 보다 인간적으로 행사될 것인가의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³⁾

만일 고 재식의 말대로 모든 인간의 삶이 직간접으로 폭력과 뿔레야 뿔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런 폭력적 사회 가운데서 교회가 혹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아닌지, 또한 교회가 도피성으로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폭력의 피해자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2) 절차

따라서 필자는 우선 한국 사회의 다양한 폭력의 양상 - 정치사회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종교적 폭력 등 -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가

교사회복지협의회, 2007), 25-38쪽. 참조, 손 병덕, “칼빈의 개혁주의 사회 복지 실천과 현대 기독교 사회복지의 과제,” 「신학지남」 통권 제 277호 (2003.겨울), 159-172쪽.

3) 고 재식, “폭력 문화의 청산을 위한 교회의 과제,” 「기독교 사상」 통권 제 382호 (1990.10), 54-63쪽.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폭력의 가해자일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수 20장의 도피성 본문을 주해하면서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양상의 폭력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도울 수 있는지의 주석적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계에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2. 현대 한국 사회의 폭력성

1) 구조적 폭력

파시즘이 유럽을 휩쓸면서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은 20세기를 한나 아렌트(H. Arendt)는 “폭력의 세기”로 규정하였다.⁴⁾ 이것은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1993년 이후 군사 독재 정권이 사라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군부의 힘에 의존한 독재적 폭력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한국의 지배 세력의 구조적 폭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교묘하고 위장된 모습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⁵⁾

구조적 폭력 이론의 대가인 요한 갈통(J. Galtung)은 “폭력의 개념을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공평으로 인한 온갖 종류의 박탈과 고통까지 포함”⁶⁾ 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물리적,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 폭력의 제거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갈통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피할 수 있는 모독”⁷⁾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갈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는 아직도 폭력이 심각하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 폭력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 종교적 폭력

4)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김 정한 옮김) (서울: 삼도, 1999), 24쪽. 원제는 Hannah Arendt,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69).

5) 김 용대, “폭력과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 4권 1호 (광주: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4.4.), 91-108쪽, 특히 105쪽; 이 재봉,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분석,” 「한국 동북아 논총」 제 7권 (서울: 한국동북아학회, 1998), 306-307쪽.

6) J.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 (1969), 167-191쪽. 이 재봉, 뒷글, 307에서 재인용.

7) J. Galtung, “Cultural Violence,” 292쪽. 이 재봉, 뒷글, 307 쪽에서 재인용.

이것은 단지 세속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종교와 신학도 얼마든지 '지배자와 제국주의 세력의 노예적 도구'로 전락하기가 생각보다 쉽고, 이럴 경우 종교와 신학은 얼마든지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⁸⁾ 이것은 한동안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한 청부론-청빈론 논쟁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청빈론(淸貧論)은 물론 청부론(淸富論)조차도 모두 나름대로의 성경적 근거와 실천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청부론이 지배 계층과 제국주의적 세력의 도구가 되어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부자들의 정당화 이론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얼마든지 종교적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⁹⁾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거쳐 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의 약자요 주변인들이었기에 주로 폭력의 희생자들이었다. 그러나 1980년을 넘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점차 사회의 중심으로 이동하였고, 자원과 지위와 권력을 소유하면서 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의 가해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다른 종교에 대한 개신교의 적극적 개종 노력과 비판적 자세는 조금만 잘못하면 다른 종교에 대한 우월적 자세와 배타적 태도로 보여지고, 한걸음 더 나아가면 폭력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국 사회의 폭력성과 교회의 사명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한반도에 살림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다른 종교와 불신사회에 폭력적인 단체로 비추어지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교회가 단지 다른 종교나 불신 사회에 폭력을 가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고질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영

8) 종교 자체가 폭력적인 종교는 거의 없다. 단지 종교가 폭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가 어떻게 폭력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울멘, "폭력의 원천으로서의 종교: 사회학적 관점," (김 주실 옮김), 『세계의 신학』 제 56권 (2002.9.), 47-67쪽, 특히 64-65쪽을 참조하라. 원제는 T. K. Oommen, "Religion as Source of Violence: A Sociological Perspective," *The Ecumenical Review* 53/2 (2001 April), 168-179쪽. 노 정선, "폭력에 대한 신학적 해석," 『기독교 사상』 통권 제 341호 (1987.5.), 22-30쪽, 특히 29쪽.

9) 김 영봉, "적선을 넘어 제도 개혁으로" 『기독교 사상』 통권 제 531호 (2003.3.), 254-266쪽. 김 영봉은 과거의 천박한 부흥사들의 청부론보다는 논리적 설득성과 세련됨을 갖춘 최근의 청부론자들(김 동호, 강 준민, 전 병욱, 이 동원 등)이 더 위험하다고 본다. 참조, 김 영봉, "청부론인가, 청빈론인가?" 『기독교 사상』 통권 제 527호 (2002.11.), 233-245쪽.

세 상인들의 탄원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반면 대형교회들은 여전히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자신의 브랜드를 이용해 지성전, 지교회를 세우면서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것도 일종의 폭력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땅을 오염시키는 폭력이 난무한 세상에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조차 구조적 폭력으로 인해 폭력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 구원'과 '평화(살롬)'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폭력이 횡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한국 교회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도피성 제도와 도피성 율법은 한국 교회의 미래에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도피성 제도는 폭력이 난무한 세상에서 진정한 살롬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역사 공동체 안에서 실현시키려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4) 도피성 제도의 독특성

오늘 우리가 수 20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도피성 제도는 궁극적으로 도피처로서 하나님의 단의 불가침성의 원리에 뿌리를 박고 있으나(출 21: 12-14), 이런 원리를 확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한 일반적이고 정규적인 제도이다.¹⁰⁾ 이렇게 전국 곳곳에 도피성 제도를 둔 것은 인간 역사에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독특한 유일무이의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¹¹⁾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부터 수 20장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 도피성 제도

1) 도피성인가? 수용성인가?

먼저 수 20장 1-3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

10) R. 드보, 「구약시대의 생활풍습」(이 양구 옮김), (서울: 기독교서회, 1983), 291쪽 이하. 원제는 Roland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Breisgau: Verlag Herder KG Freiburg, 1964).

11) J. A. Soggin, *Joshua*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198쪽. 참조, R. G. Boling/G. E. Wright, *Joshua* (AB), (New York: Doubleday, 1982), 473쪽. 심지어는 비평주의자들조차도 도피단(the altar-asylum)의 제도는 일찍이 - 최소한 솔로몬 시대에 - 도피성의 제도로 대체되었다고 본다.

을 택정하라고 명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מִקְלָט הַיָּרֵד**(아래 함미크라트/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중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수 20: 2-3).”

‘도피성’(cities of refuge)이란 명칭 **מִקְלָט הַיָּרֵד**(아래 함미크라트)는 ‘도시’라는 의미의 **יָרֵד**(이르/성, 도시)의 복수 구문형과 ‘끌어들이다’(to draw in)라는 의미의 동사 **קָלַט**(칼라트)에서 나온 명사 **מִקְלָט**(미크라트/수용, 영접)가 연결된 복합 명사이다. 따라서 최근에 일부 학자들은 비록 이 성들이 ‘도피와 피난을 위한 도시’이긴 하지만, ‘끌어들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מִקְלָט**(미크라트)의 뜻을 살려서¹²⁾ ‘도피성’이라기 보다는 ‘수용의 도시’(city of admittance)¹³⁾ 혹은 ‘영접의 도시’(city of reception)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¹⁴⁾

2) 누구를 위한 도피성인가?

그렇다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수 20: 2-3).”

도피성에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בְּלִי-דַעַת** 비블리-다이아트)에 오살한 자’이다. 먼저 ‘부지중’이란 ‘알지 못하고(without knowing)’한 것, 다시 말해 ‘의도 없이’한 일을 가리킨다. 부지중이란 히브리 용어는 신 4장 42절과 신 19장 4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위 본문의 경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도끼 날이 빠져 날아가 누군가를 죽인 경우를 구체적인 실례로 들고 있다. 따라서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

12) M.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Grand Rapids: Eerdmans, 1981), 298쪽, 각주 1번.

13) R. D. Nelson, *Joshua*, (OTL) (Louisville: Westminster, 1997), 229쪽.

14) Woudstra, *Joshua*, 298쪽, 각주 1번. 실제로 이런 명칭은 도피자들이 단지 피신하는 수동적인 장소가 아니라, 무고한 도망자들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능동적 장소라는 의미를 드러내기에 좋은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음'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아야 한다.

한편 '오살한 자'(מַכֵּה נַפְשׁוֹ מַכֵּה מַכֵּה מַכֵּה 마케-네페쉬 비쉬가가)란 직역하면 '실수로 인간을 죽인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실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נָשָׂא(세가가)는 태만(negligence) 이나 무지(ignorance)로 인한 실수 중 하나를 가리킨다.¹⁵⁾

결국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도피성은 비교의적으로 살인한 자, 태만이나 무지 같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다시 말해 도피성은 원한이나 미움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도피성 제도의 기저에 깔린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실수로' 범한 죄를 다루면서 נָשָׂא(세가가)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레위기 4장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곳을 보면 비록 실수로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레 4: 22, 27). 따라서 도피성은 '안전한 장소인 동시에 죄인이 죄의 결과에 대해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트렌트 버틀러(T. C. Butler)가 도피성은 "도피처인 동시에 감옥"¹⁶⁾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3) 누구로부터의 도피인가?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도피성 공동체가 비교의적인 살해자를 누구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인가?'이다.

"이는 너희 중 אֱלֹהֵי הַדָּם(고엘 핫담/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수 20: 3하).

우리는 여기서 도피성은 '피의 보수자'로부터 비교의적 살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피의 보수자는 אֱלֹהֵי הַדָּם(고엘 핫담 수 20: 3, 5, 9)으로 אֱלֹהֵי(고엘)이라는 단어는 '보수자'라기 보다는 '구속자'라는 의미이기에, 고엘 핫담은 '피의 보수자'(the avenger

15) D. M. Howard, *Joshua*.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8), 382쪽.

16) T. C. Butler, *Joshua* (WBC), (Waco: Word Books, 1983), 216쪽.

of blood)라기 보다는 ‘피의 구속자’(the blood-redeemer)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¹⁷⁾

4) 피의 구속자의 개념의 배경

그렇다면 도대체 ‘피의 구속자’의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성경은 무고한 자가 흘린 피는 땅과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오염시킨다고 본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민 35: 33).

성경은 피흘림에 의해 생긴 땅과 공동체의 오염은 오직 피를 흘리게 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정결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살해함으로 생긴 죄책은 동물 제사로 결코 정결케 할 수 없을 뿐 (창 9: 6) 아니라, 고의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는 속전도 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다 (민 35: 31-32). 그러나 고대 근동 아시아의 인근 국가들은 고의적인 살인자의 경우라도 얼마든지 속전을 내고 살아날 수 있었다.

“헛 법과 중기 앓수르 법은 모두 살인자의 생명을 되사기 위해 속전을 지불하게 한다. 앓수르 법은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족에게 살인자를 처형할 것인지 속전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중도를 취한다.”¹⁸⁾

이에 반해 성경은 고의적인 살해자의 경우는 피의 구속자를 통해 살인자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서만이 살인으로 인한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공동체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결국 현대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이상해 보이는 이 ‘피의 구속자’라는 풍습 뒤에는 ‘인간 생명의 가치

17) Boling/Wright, *Joshua*, 473쪽.

18) 존 월트/빅터 매튜스/마크 사발라스, 「IVP 성경 배경 주석: 창세기-신명기」 (정 옥배 옮김),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2000), 233쪽. 원제는 John H. Walton, Victor H. Matthews, and Mark W. Chavalas, *The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0).

와 존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은 물론 살인 행위에 대한 깊은 분노와 애도의 정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결케 하는 행위의 초점은 사회 유기체의 건강에 있는 것이지, 살해자의 목숨을 끊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¹⁹⁾

4. 도피자가 해야 할 일

도피자는 도피성에 도착하면 먼저 따라야 할 규칙이 있었다.²⁰⁾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수 20: 4상).”

도피자는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 성읍 장로들에게 먼저 사고를 알려야 했다. 그렇다면 성읍 장로들 앞에서의 보고는 무슨 성격인가? 수 20장 6절에 보면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라는 시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성읍 장로들에 대한 보고는 회중 앞에서의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도피성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의 ‘약식 청문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5. 도피성 공동체가 해야 할 일

1) 영접

이 경우에 도피성 공동체에서는 도피해온 자를 위해 세 가지 행동을 해야 했다 (수 20: 4-5). 도피성 공동체는 도피자를 ‘받아 들이고,’ ‘살 장소를 주고’ 그리고 ‘피의 보수자에게 인도하지 않아야 한다.’

첫째로, 도피성 공동체는 도피자를 성읍 안으로 받아 들여야 했다.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수 20: 4중).”

도피성의 장로들은 우선 도피자를 성읍에 **קָבַץ**(이사프/받아들여야)했

19) E. J. Hamlin, *Joshua: Inheriting the Land*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3), 131쪽.

20) 이런 규칙은 민 35장이나 신 19장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수 20장 여기에만 나온다.

다. 여기에 ‘받는다’라는 동사 קָבַץ(아사프)는 ‘추수하다’(룻 2: 7)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주인이 손님을 맞이한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도피성의 장로들이 부지 중에 살해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가 버린 자들이라도 그의 보호 아래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시 27: 10) 것이다.²¹⁾ 결국 도피성의 장로들이 도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쫓겨난 자, 유랑하는 자, 도망자를 다시 모으시는’ 여호와와의 사랑을 본 받은 공동체가 당연히 보여야 할 행동인 것이다.

2) 장소의 제공

도피성 공동체는 도피해온 자를 영접해야 할 뿐 아니라, 그에게 살 장소를 주어야 했다.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수 20: 4하).”

도피성 공동체가 도피한 자에게 ‘한 곳’을 주는 것은 도피처, 숨을 수 있는 피난처를 준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도피자에게 한 곳을 주어 ‘자기들과 함께 거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단지 거처를 주었다는 의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도피성은 레위 도성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피성은 레위 도성, 즉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한 도시였다. 만일 레위인들이 이 도성에 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면, 도피자들도 단지 도피성에서 피신만 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단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²²⁾ 실제로 유대 랍비들은 이 명령의 실제적 성격을 강조하였다.²³⁾ 랍비들은 이런 이들이 사는 곳은 세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직업 훈련까지 시켜 주어야만 한다고 가르쳤다.²⁴⁾ 만일 도피자들이 랍비들의 견해대로 단지 살 장소 뿐 아니라 생계 수단까지 얻었다고 한다면, 구약의 높은 사회적 양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²⁵⁾

21) Hamlin, *Joshua: Inheriting the Land*, 132쪽.

22) Soggin, *Joshua*, 198쪽. 반면에 버틀러는 무죄임이 입증되면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아마도 그 성의 성전이나 제사장들을 섬기며 살았을 것이기에 사실상 죄수(a virtual prisoner)나 다를 바 없이 살았다고 본다. 참조, Butler, *Joshua*, 218쪽.

23) Hamlin, *Joshua: Inheriting the Land*, 133쪽.

24) Hamlin, *Joshua: Inheriting the Land*, 133쪽.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최소한 도피성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님은 '거처가 없는 자에게 거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시 68: 6). 이런 점에서 무죄한 도피자들을 도피성 공동체가 영접하여 살 곳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도피성 공동체는 외로운 자들에게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보호

도피성 공동체의 세 번째 의무는 피의 구속자가 피의 보수의 법에 따라 도피자를 내어달라고 요구할 때 그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수 20: 5).”

물론 이 경우에는 도피자가 부지 중에 이웃을 살인했다는 전제하에서만 보호를 하는 것이다. 도피성 공동체는 피의 구속자의 성난 요구를 거부하고 도피자를 보복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죄한 자를 파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시 31: 8).”

우리는 지금까지 도피성 공동체의 세 가지 의무를 살펴보았다. 도피성 공동체는 실수로 살인한 도피자를 ‘받아들이고,’ ‘살 장소를 주고,’ 그리고 ‘피의 구속자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폭력이 횡횡한 세상에 살림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6. 대체사장의 속죄와 도피성의 자유

1) 체류 기간

그렇다면 이것이 도피성 제도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 도피자에게 배

25) Woudstra, *Joshua*, 300쪽, 각주 9번; 참조, Soggin, *Joshua*, 198쪽.

풀어야 할 세 가지 책임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자가 겪어야 할 사법적 절차에 대해 언급하신다. 도피자가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체류 기간에 관해서, 두 가지의 시간 제한이 언급되어 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수 20: 6)²⁶⁾

그런데 “회중 앞에서 재판 받기까지”와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라는 두 가지의 시간 제한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접속사도 없이 그저 병치되어 있다. 이런 단순 병치 배열은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²⁷⁾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부 해석자들은 두 가지의 시간 제한을 일종의 “선택 사항”으로 보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²⁸⁾ 다시 말해 실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거나, 아니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다른 해석자들은 이 두 시간 제한을 ‘2단계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²⁹⁾ 민 35장을 보면 2단계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26) 한글 개역은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라고 ‘나’가 첨가되어 마치 선택 사항처럼 번역되어 있음.

27) Woudstra, *Joshua*, 300쪽.

28) C. J. Goslinga, *Het Boek Jozua*, Korte Verklaring der Heilige Schrift (Commentaar op het OT), (Kampen: J.H Kok, 1955), 148쪽; Cf. H. W. Hertzberg,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ATD IX),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4), 114쪽.

29) 예를 들어 New English Bible를 보면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당시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민 35: 12, 25, 28).”

물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자료를 가지고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두 시간 제한을 일련의 전체 과정의 두 단계로 보는 것이 제일 좋아 보인다.

도피성 공동체는 (1) 우선 도피자를 원래 도시의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며, (2) 재판을 거쳐 고의적 살해가 아니었음이 입증되어 무죄가 되면, 대제사장이 죽어서 보복의 두려움 없이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도피성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³⁰⁾

2) 부록: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무죄한 도피자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대체 도피자의 도피성 체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다. 일부 학자들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일종의 사면령이 내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볼링과 라이트(Boling & Wright) 는 말한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아마도 일반 사면의 기회였던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도망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민 35: 25, 28).”³¹⁾

만일 대제사장의 죽음이 한 시기를 종결하는 역할을 한다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형의 제한 규정’이었을 수도 있다.³²⁾ 그러나 이에 대해 월튼(J. H. Walton)과 매튜스(V. H. Matthews)와 마크 샤발라스(Mark W. Chavalas) 는 반대한다.

“이것은 과실 치사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해 주는 도피성 안에서의

30) Howard, *Joshua*, 385쪽.

31) Boling/Wright, *Joshua*, 474쪽; Jerome F. D. Creach, *Joshua*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3), 105쪽.

32) 이런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B. van Oeveren, *De Vrijsteden in het OT*, Diss., Amsterdam (1968), 162-68쪽을 참조하라.

유형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 20: 2-6을 보라). 죽임을 당한 자의 피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만 속죄할 수 있다.”³³⁾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대속적 효과를 내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³⁴⁾ 다시 말해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창출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³⁵⁾

3) 무의식적인 범죄의 속죄

이 점을 더 잘 이해하고, 제사장 도시 안에 도피자의 체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레 4 - 5장과 민 15장). 레 4 - 5장을 보면 의식적으로 법을 어겼는지 스스로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을 어긴 자는 죄를 진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벌을 당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레 5: 17).”

따라서 부지중에 저지른 죄라도, 죄책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속죄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우리는 햄린(E. J. Hamlin)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도피성에 관해서는 이런 류의 의식이 있었다는 암시는 없다. 그러나 도피성에 도피자가 체류하는 기간의 끝을 대제사장의 죽음과 신비하게 연결시킨 것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 어찌면 대제사장의 죽음 (수 20: 6; 민 35: 25)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의식에서 희생 동물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간주되었는지 모른

33) 월튼/매튜스/샤발라스, 「IVP 성경 배경 주석: 창세기-신명기」, 233쪽.

34) Woudstra, *Joshua*, 301쪽; Howard, *Joshua*, 385-386쪽.

35) 월튼/매튜스/샤발라스, 「IVP 성경 배경 주석: 창세기-신명기」, 233쪽. 물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 L. Delekat 는 이 규정은 입양과 노예 율법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도피자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돕는 종으로 살았을 것인데 대제사장이 죽자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대제사장이 자기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참조, L. Delekat, *Asylie und Schutzorakel am Zionheiligtum*, (Leiden: E.J. Brill, 1967), 290-320쪽. 이 이론을 Butler도 지지하고 있다. 참조 Butler, *Joshua*, 217쪽.

다.”³⁶⁾

물론 죄를 속하는 것은 제물이지만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에서 행하는 중심적 역할을 볼 때,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대속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이다.³⁷⁾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7. 실천적 제언

1) 고대제도의 현대적 의미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여호와와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계획의 청사진 중 하나였다. 가나안 사회는 후기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원전 1550-1200) 소수의 지배자들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수의 농민들과 목축업자들이 사회의 천민인 하비루로 전락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삶을 유지하기 힘든 사악한 공동체로 바뀌고 있었다.³⁸⁾ 아마르나 서신과 비명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등장하기 직전과 출현 도중에 가나안 땅은 “만성적인 소규모 전쟁 상태에 휩싸여 있었다”³⁹⁾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이다.

전쟁에서만 폭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어디 있을까? 이런 가나안 땅에 진정한 살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선물로 분배하신 (수 13 - 19장) 후에 제시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인 것이다.⁴⁰⁾ 따라서 우리는 폭력이 난무하는 이 한반도 땅에

36) Hamlin, *Joshua: Inheriting the Land*, 134-135쪽.

37) Woudstra, *Joshua*, 301쪽; J. H. Kroeze, *Het Boek Jozua (Commentaar op het OT)*, (Kampen: J.H. Kok, 1968), 224쪽. 이와는 다른 이론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의 죽음을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갖는 대표적 기능과 연결시켜 본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대표하기에 레위 지파의 대속이라는 것이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와 도피성 (레위성) 사이의 연결 고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것이다. 참조 W. H. Gispen, *Het Boek Numeri II. (Commentaar op het OT)*, (Kampen: J. H. Kok, 1964), 304쪽.

38) M. L. 채니, “군주제 이전의 이스라엘 형성,” D. N. 프리드먼/D. F. 그라프(편), 「전환기의 팔레스틴—고대 이스라엘의 출현」 (이 순태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86-188쪽.

39) 채니, “군주제 이전의 이스라엘 형성,” 132쪽.

40) 비평주의자들도 여호수아서의 도피성 본문을 후대의 작품으로 보면서도 그 관습은 오래 된 것으로 인정한다. 참조, 로이 메이, 「여호수아와 약속의 땅」 (서 광선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06쪽. “여호수아서의 도피성 본문은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민 35: 9-34; 신

서 교회가 진정한 살롬을 창출해 내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이 도피성 제도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수 20장의 주해를 근거로 현대 한국 교회를 위한 몇 가지의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인식의 전환

한국 교회는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자부하고, 제 3자적 입장에서 폭력은 악이라고 선언하는 자세를 버리고,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 얼마든지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도피성의 기능은 의도적으로 남을 살해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실수로 타인을 살해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한국 교회는 부지 중에 실수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와 교계의 살롬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잘못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우들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3) 비전의 공적 선포

한국 교회는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지 폭력의 피해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공포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도피성의 비전을 선포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수 20: 2)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도피처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부수 프로그램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점을 비전으로 선포해야 한다.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도피자들을 돕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역시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설교는 도피자들을 위한 진정한 도피처가 되어야 한다.”⁴¹⁾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도피처는 커녕 이중

19: 1-13), 이 관습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추측된다. 수 20장 7-9절에 나열된 고대의 지역 이름이 이를 뒷받침한다.”

41) 고 재식, “폭력 문화의 청산을 위한 교회의 과제,” 55쪽.

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용주의 적 방법을 가장한 부당 해고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단지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라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설교하는 경우 자칫하면 설교자의 의도와는 달리 힘있는 자들의 편을 결과적으로 들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4) 구체적 도움의 실천

교회는 폭력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앞서 살핀 대로 도피성이 도피자들이 단지 피신만 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단도 얻었다고 한다면 교회 역시 도피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야 한다. 랍비들은 이런 이들이 사는 곳은 세를 받아서는 아니 되었으며,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직업 훈련을 시켜주어야 만 한다고 강조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⁴²⁾ 일부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운영하는 것은 이런 의도에서일 것이다. 최근에 일부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상점을 열거나 살 거처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의 선한 뜻은 인간의 유한한 자원에 의해 쉽게 고갈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고, 그 은혜를 늘 힘입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한국 교회가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진정한 도피성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소망해 본다.

8. 참고문헌

- 고 채식, “폭력 문화의 청산을 위한 교회의 과제,” 「기독교 사상」 통권 제 382호 (1990.10.), 54-63쪽.
김 영봉, “적선을 넘어 제도 개혁으로,” 「기독교 사상」 통권 제 531호 (2003.3.), 254-266쪽.

42) Hamlin, *Joshua: Inheriting the Land*, 133쪽.

- _____, “청부론인가, 청빈론인가?” 「기독교 사상」 통권 제 527호 (2002.11.), 233-245쪽.
- 김 용대, “폭력과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 4권 1호 (광주: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4.4.), 91-108쪽.
- 김 은수, “기독교 사회복지의 신학적 패러다임,” 「신학 사상」 통권 제 112호 (2001.3.), 163-182쪽.
- 김 은수/이 신행, “기독교 사회복지 신학 모색을 위한 기초적 작업,” 「기독교 사상」 통권 제 475호 (1998.7.), 142-156쪽.
- 김 지찬, “구약 성서에서의 사회복지,” 「한국 기독교 사회 복지 총람」 (서울: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협의회, 2007), 25-38쪽.
- 노 정선, “폭력에 대한 신학적 해석,” 「기독교 사상」 통권 제 341호 (1987.5.), 22-30쪽.
- 드보, 롤랑, 「구약시대의 생활풍습」 (이 양구 옮김), (서울: 기독교서회, 1983). 원제는 Roland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Breisgau: Verlag Herder KG Freiburg, 1964).
- 메이, 로이, 「여호수아와 약속의 땅」 (서 광선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베이, 크리스천, “폭력과 자유,” 「기독교 사상」 171 (1972.8), 60-66. Christian Bay가 *American Scholar* 1971 년 가을호에 실은 글이라고만 밝혀 있기에 정확한 제목은 모름.
- 손 병덕, “칼빈의 개혁주의 사회 복지 실천과 현대 기독교 사회복지의 과제,” 「신학지남」 통권 제 277호 (2003.겨울), 159-172쪽.
- 움벤, “폭력의 원천으로서의 종교: 사회학적 관점,” (김 주실 옮김), 「세계의 신학」 제 56권 (2002.9.), 47-67쪽. 원제는 T.K. Oommen, “Religion as Source of Violence: A Sociological Perspective,” *The Ecumenical Review* 53/2 (2001 April), 168-179.
- 윌튼, 존-빅터 매튜스-마크 샤발라스, 「IVP 성경 배경 주석: 창세기-신명기」 (정 옥배 옮김),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2000). 원제는 John H. Walton, Victor H. Matthews, and Mark W. Chavalas, *The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0).
- 윤 용복, “한국 종교들의 폭력성,” 「사목」 제 329권 (2006.6.), 50-57쪽.
- 이 재봉,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분석,” 「한국 동북아 논총」 제 7권 (서울: 한국동북아학회, 1998), 306-307쪽.
- 임 태수, “폭력의 희생자 예수--폭력의 극복자 예수,” 「기독교 사상」 통권 제 519호 (2002.3.), 55-69쪽.
- 아렌트, 한나, 「폭력의 세기」 (김 정한 옮김). (서울: 삼도, 1999). 원제는 Hannah Arendt,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69).
- 체니, M. L., “군주제 이전의 이스라엘 형성,” D. N. 프리드먼/D. F. 그라프(편), 「전환기의 팔레스타인--고대 이스라엘의 출현」 (이 순태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 Boling, R. G./G. E. Wright, *Joshua*(AB), (New York: Doubleday, 1982).
- Brown, R. McCafee, *Religion and Violenc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3).
- Butler, T. C., *Joshua*(WBC), (Waco: Word Books, 1983).
- Craigie, P., *The Book of Deuteronomy*(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6).
- Creach, J. F. D., *Joshua*(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3).
- Delekat, L., *Asylie und Schutзорakel am Zionheiligtum*, (Leiden: E.J. Brill, 1967).

- Galtung, J.,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 (1969), 167-191.
- Gispen, W. H., *Het Boek Numeri II*. (Commentaar op het OT), (Kampen: J.H. Kok, 1964).
- Goslinga, C. J., *Het Boek Jozua*, (Commentaar op het OT), (Kampen: J.H. Kok, 1955).
- Hamlin, E. J., *Joshua: Inheriting the Land,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entary*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3).
- Hertzberg, H. W.,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ATD IX),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4).
- Howard, D. M., *Joshua*(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8).
- Kroeze, J. H., *Het Boek Jozua* (Commentaar op het OT), (Kampen: J.H. Kok, 1968).
- Mendenhall, G. E., *The Tenth Generation: The Origins of the Biblical Tradition*, (Baltimore/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 Nelson, R. D., *Joshua*(OTL), (Louisville: Westminster, 1997).
- Oeveren, B. van, *De Vrijsteden in het OT*, Diss., Amsterdam(1968).
- Soggin, J. A., *Joshua*(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 Woudstra, M. H., *The Book of Joshua*, (Grand Rapids: Eerdmans, 1981).

검색어

폭력

도피성

여호수아(서) 20장

한국 교회

대제사장의 죽음과 자유

Are Korean churches sources of violences or cities of refuge?

Jichan Kim, Th.D.

Professor, Department of Old Testament
Chongsh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few helpful and constructive suggestions for Korean churches who want to fulfill their essential mission as 'cities of refuge.' In the past decades Korean churches have been both victims of violences and doers of violences. Nowadays it is universally admitted that human life, directly or indirectly, cannot be separated from violence. The study of past Korean church history shows us that even churches and Christians have committed violence toward others. Therefore we have to raise serious questions as following: Whether our churches, in stead of becoming 'cities of refuge,' have rather become sources of violence in modern Korean societies or not? If our churches are to fulfill its essential mission as 'cities of refuge,' how could they deal with the victims of violence in Korea?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have to do literary analyses on Joshua 20, one of the classical texts on the topic of cities of refuge. The methodology of this paper is a grammatical-historical-theological method.

On the basis of this exegetical work we can offer Korean churches following suggestions. In the beginning, Korean churches should not boast that they have not - at least consciously - used violence toward anyone, but should admit the undeniable fact that they have unconsciously done violence to societies and even to other churches because of survival and competition within churches themselves. Secondly, Korean churches should proclaim the good will that churches, as modern version of 'cities of refuge', will always be ready to welcome any victims of violence. The churches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helping the victims financially and legally. More importantly, worship and sermon should be consciously designed and acted out to help them spiritually and morally. That is because sometimes the preachers unconsciously do violence to the already victimized people by standing beside the strong and the rich while delivering sermons. Finally, Korean churches should develop and establish concrete - social, legal, and financial - systems of helping the victims and provide spaces for counseling and shelter in the church to help them.

Keywords

violence
cities of refuge
Joshua 20
Korean churches
death of the high priest and freedom